

『陶藝研究』 윤리 규정

제1조 (총칙)

가. 이 규정은 『陶藝研究』 윤리 규정이라 한다.

나. 윤리 규정은 『陶藝研究』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구현하며 연구와 관련된 부정행위 방지와 투명성, 공정성 있는 학술을 정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 윤리)

가. 논문 투고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진실성을 확보한 논문만을 투고해야한다.

나.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출처를 명확히 명시한다. 활용된 이미지 자료는 사용 정보처를 공개하며, 특히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자료 제공자로부터 확실한 동의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투고자는 게재한 논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논문 제출 시에 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3조 (편집위원 윤리)

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투고자, 편집위원 사이에 공정성을 유지한다.

나.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과정에 대해 외부에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공개할 경우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제재를 받는다.

다. 편집위원은 게재 논문의 윤리에 문제를 발견하면 연구소에 고지하고 편집회의에 건의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협력한다.

제4조 (연구의 부정행위)

가. 부재한 자료, 데이터베이스,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조작한 행위.

나.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절차 없이 도용하거나 인용 없이 서술하는 행위.

다. 국내외의 타 학술지나 저서에 이미 실린 내용을 새로운 발굴내용으로 인용, 표현, 번역하는 행위. 특히 투고자는 물론 타인이 국외에서 출판된 저서, 논문, 저널 등에 실린 내용들을 표절, 문구 손질 등으로 인용하여 자신의 논문으로 투고하는 행위. 다만 논문 이외 서평, 자료 보고서, 연구 및 분석사례 등은 예외적으로

규정하며,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자신의 해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간행규정 제3조 '라'항 참고)

라. 학계나 연구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면 대상에 구분 없이 본 연구소에 서면 혹은 유선 상으로 제보하고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제보가 접수되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제6조 (부정행위에 대한 대처)

가. 제6조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접수되면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회의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편집위원회를 통해 확보한다.

다. 조사내용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투고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제7조 (제보자의 권리 및 보호)

가. 부정행위의 제보자는 익명으로 반드시 보호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충분히 상의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 제보자와 투고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권리 및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

제8조 (부정행위 투고자에 대한 처우)

부정행위 투고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며, 차후 소명 방식과 개선에 대해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제재 조치)

가. 부정행위 의결 내용과 사유를 제보자와 투고자에게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학술지 게재취소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하며 해당 학술지에 일정기간 투고를 금지한다. 이 사실은 도예연구소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제10조 (재심의)

가. 제보자와 투고자가 부정행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연구소는 재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0년 8월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규정설정) 본 규정은 도예연구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모든 사항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